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1174)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로변의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업소의 게시물 독점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한 규정과 함께 특히, “다른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3개소까지”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수막 독점 규제 조항을 만들어서 지정게시물의 공평한 사용을 조성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설치 개수를 3개소로 제한하는 것은 광고권 제한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수입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개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다른 현수막 게시신청이 없
는 경우에도 광고 제한 규정을 풀어줌으로써 추가 광고를 원하는 업
소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자치구의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발의대로 만장일
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